2017년 화학물질 전문인력 교육

화관법 관련 대관 행정사항

2017. 11. 23

WESRI (주)원일환경안전연구원

장외영향평가 컨설턴트
방 극 진
bang0428@hanmail.net
☎ 010-3644-7953

Contents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 설치 · 정기검사
3. 안전진단
4. 자제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5. 유해화학물질 표시
6. 화관법 관련 행정처분
7. 기타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개 요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을 **제조(제조업)**, 상업적으로 **판매(판매업)**,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 저장(보관. 저장업), 운반(운반업)** 및 제품 제조나 세척. 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사용(사용업)**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

※ 허가물질, 금지물질은 영업허가 제외

제도에 대한 이해

개정법 이전에는 유독물 영업을 하려는 경우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하고, 취급제한. 금지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무허가 영업]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화관법 제58조제4호)

유해법 · 화관법의 취급기준

구 분	관련 조항	준수 항목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시행규칙 제24조 별표4「유독물의 관리기준」 - 시행규칙 제33조 별표8「취급제한. 금지물질 영업자의 취급기준」 - 시행규칙 제17조 별표3「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시설 기준	79개
화학물질 관리법	-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별표5「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시행규칙 제8조 별표1「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46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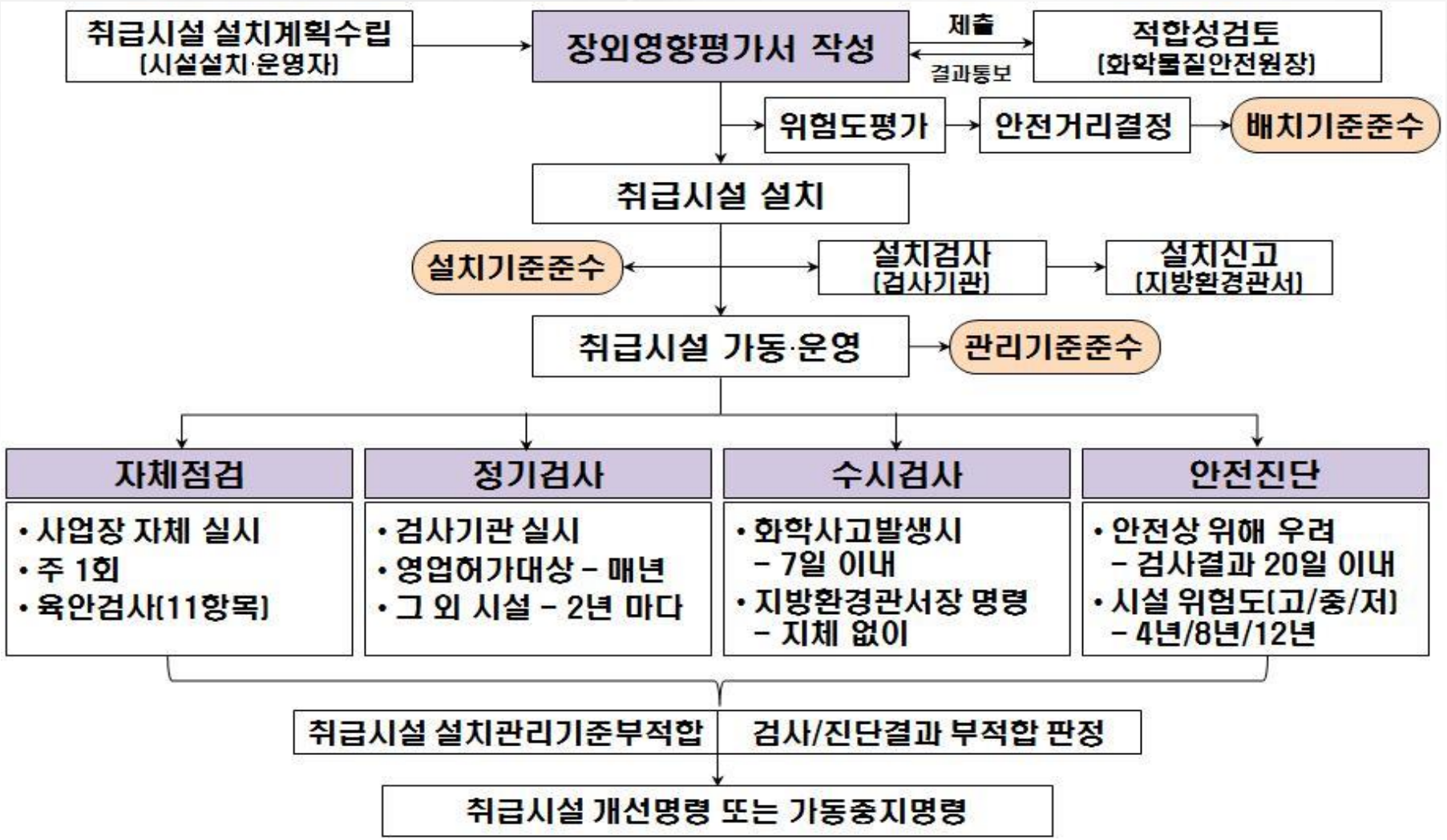
취급시설 설치계획수립
(시설설치·운영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제출
결과통보
적합성검토
(화학물질안전원장)
위험도평가
안전거리결정
배치기준준수
취급시설 설치
설치기준준수
설치검사
(검사기관)
설치신고
(지방환경관서)
취급시설 가동·운영
관리기준준수
자체점검
• 사업장 자체 실시
• 주 1회
• 육안검사(11항목)
정기검사
• 검사기관 실시
• 영업허가대상 – 매년
• 그 외 시설 – 2년 마다
수시검사
• 화학사고발생시
– 7일 이내
• 지방환경관서장 명령
– 지체 없이
안전진단
• 안전상 위해 우려
– 검사결과 20일 이내
• 시설 위험도(고/중/저)
– 4년/8년/12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부적합
검사/진단결과 부적합 판정
취급시설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명령

❑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종류 및 허가 대상

●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종류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 업 → 제품이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취급시설이 있는 판매업 vs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보관 · 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 · 저장하는 영업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 · 선박 · 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하는 영업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 · 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제품이 非유해화학물질

- 영업허가 종류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허가물질 및 금지물질 제외)
- 신규영업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구 분	내 용	비 고
신규 허가	공장을 최초로 설립한 경우	착공전 허가신청
변경 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① 업종별 보관 . 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50/100 이상 증가) ②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50/100 이상 증가) ③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만 해당, 시범생산 제외) ④장외영향평가 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서 장외영향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 내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 위치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⑤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	변경이 발생하기 전

- 영업허가 종류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허가물질 및 금지물질 제외)
- 신규영업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구 분	내 용	비 고
변경 신고	① 사업장의 명칭 · 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② 장외영향평가 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었으나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범생산용인 경우(시범기간 60일 이내) ③ 장외영향평가 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 내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 위치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변경된 날로부터 30일내

- 영업허가 종류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허가물질 및 금지물질 제외)
- **영업허가 면제대상**

물질 분류	면제 사항		근 거
공통사항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염업을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 · 연구용 · 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1. 한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2.「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장외 영향평가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자 3「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제외)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 사업장에서 연간 120ton 이하 사용**하는 자 -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 연간 60ton 이하 사용**하는 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 연간 240ton 이하 사용**하는 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한물질 (사고대비 물질 제외)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ton 이하 사용**하는 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한물질 06-5-8호(Lead 7439-92-1]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고체 상태의 경우에만)을 어린이용 제품을 제외한 용도로 영업하려는 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4-261호)
사고대비물질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kg 이하 사용**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4-261호)
	유독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	환경부고시 제2014-260호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별표1]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이하 사용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 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대상이 아닌 자**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 사용하는 자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공업지역 구분

1.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安寧)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 상업 및 그 밖의 업무의 편익(便益)을 증진(增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 자연환경 ·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綠地)의 보전(保全)이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며
오염피해의 발생 를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형지세 · 풍향 · 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시키며, 공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공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①전용공업지역 : 공업만을 위한 전용공업지역으로 주로 중화학공업 및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철도 · 화물전용도로 공항터미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동력 및 용수공급, 폐기물처리에 유리한 지역 및 중화학 공장지대

②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전용공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주업체의 종류에 다소 제한이 있는 용도지역
- 취업자들의 통근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노동력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 시설의 고도이용, 관리 및 외부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의 외곽 또는 근교지역으로서 화물교통과 도시 내 일반통행 발생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 주거지역 혹은 상업지역과 근접한 지역에 있음.

③준공업지역 : 경공업 및 그 밖의 공업을 입주시키되 주거 및 상업 그리고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 주거, 상업, 공업기능이 뒤섞어 있는 지역
- 주민의 일상용품을 생산 수리 · 정비하는 공장과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제조업을 수용하는 지역으로서 시가화지역에 민접한 지역 등을 대상므로 지정하며
- 대도시의 경우에는 완충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인접한 경우에 한하고, 중소도시에서는 중소규모의 공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

영업허가증 있는 경우(변경허가/변경신고)

변경 내용	제출기준	영업구분	제출시기	제출처
1.업종별 보관 · 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의 용량이 50/100이상 증가한 경우	변경된 장외영향	변경허가	변경전 30일내	안전원
2.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50/100이상 증가한 경우	변경된 장외영향	변경허가	변경전 30일내	안전원
3.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 (영업허가증에 없는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①화학사고 발생으로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	변경된 장외영향	변경허가	변경전 30일내	안전원
②화학사고 발생으로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	변경검토서	변경허가	변경후 30일내	안전원

● 영업허가증 있는 경우(변경허가/변경신고)

변경 내용	제출기준	영업구분	제출시기	제출처
4.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중 장외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				
(1)동일한 사업장내 취급시설이 증설된 경우				
①취급시설 증설되어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증설규모가 소량기준 이상으로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	변경된 장외영향	변경허가	변경전 30일내	안전원
②취급시설 증설되어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증설규모가 소량기준 이상으로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	변경검토서	변경신고	변경후 30일내	환경청
③취급시설 순차적으로 증설(변경)되어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누적된 증설규모가 소량기준 이상으로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	변경된 장외영향	변경허가	변경전 30일내	안전원
④취급시설 순차적으로 증설(변경)되어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누적된 증설규모가 소량기준 이상으로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	변경검토서	변경신고	변경후 30일내	환경청

영업허가증 있는 경우(변경허가/변경신고)

변경 내용	제출기준	영업구분	제출시기	제출처
(2)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				
①사고시나리오 원점에서 사업장 부지경계까지의 최단거리가 감소되어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	변경된 장외영향	변경허가	변경전 30일내	안전원
②사고시나리오 원점에서 사업장 부지경계까지의 최단거리가 감소되어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	변경검토서	변경신고	변경후 30일내	환경청
③실내에서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④실내공간의 크기 및 운전조건 등이 변경되어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	변경된 장외영향	변경허가	변경전 30일내	안전원
⑤실내공간의 크기 및 운전조건 등이 변경되어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	변경검토서	변경신고	변경후 30일내	환경청

영업허가증 있는 경우(변경허가/변경신고)

변경 내용	제출기준	영업구분	제출시기	제출처
(3)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				
①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어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	변경된 장외영향	변경허가	변경전 30일내	안전원
②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어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	변경검토서	변경신고	변경후 30일내	환경청
③동일한 보관·저장·진열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었더라도 유해·위험성이 동일한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④동일한 보관·저장·진열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시설의 운전온도 및 압력이 변경되어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	변경된 장외영향	변경허가	변경전 30일내	안전원
⑤동일한 보관·저장·진열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시설의 운전온도 및 압력이 변경되어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	변경검토서	변경신고	변경후 30일내	환경청

영업허가 절 차《 업무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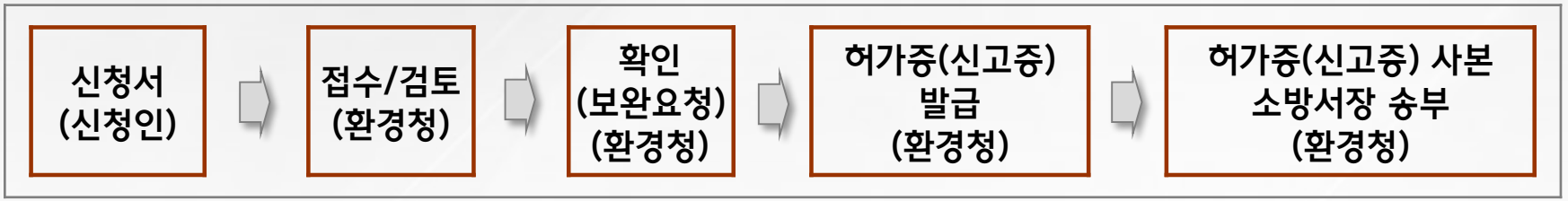

※검토 단계에서 다른 법령 저촉사항이 발견될 경우 허가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영업허가 구 비 서 류

- 적합 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취급시설 검사 결과서”, "위해관리계획서“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연간취급예정량(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장비 및 기술인력 명세서(시행규칙 별표6)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운반업인 경우)
-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 없음 증명 서류

신규 영업허가

연번	제출할 서류	해당자
①	**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43호) 2p. ※ 정부수입인지 30,000원 첨부!!!<전자수입인지싸이트 / 행정용으로 구입> ※ 신청서의 **서명란에 회사 직인** 또는 서명기재 여부 확인!! ※ 매출액은 최근 3년 동안의 해당 사업장의 평균 매출액 기재(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어야 함	공 통 [제조. 사용. 저장보관. (알선)판매. 운반 모두]
② - i,i	**유해화학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시행규칙 별지 44호) 4~5p.** ※ 물질별로 작성하며,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반드시 기재(취급이 제한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코자 함) ※ 단, **용도**는 화학물질평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표에 있는 것으로 작성(20p.)	공 통
③	건축물 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위수탁계약서(사본) ※ 해당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사항 확인	공 통
④	**취급시설**(사용. 제조. 보관. 저장. 판매) **설치내역서** 6~7p. - 면적㎡, 용량㎥, 수량, 위치도, 배치평면도 등 포함 ※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도면 등 첨부 - 공정도(?? → ?? → ?? → ?? → → ??)	다음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 사용시설. 제조시설 보유 - 보관. 저장시설 보유 - 판매장 보유
⑤	적합판정을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8p. ※ 취급시설검사결과신고서, 정부수입인지 9,000원 첨부!!! ※ 운반차량도 취급시설임!!	취급시설 보유자만

신규 영업허가

연번	제출할 서류	해당자
⑥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및 화학물질안전원 **적합통보문서** 10p.	취급시설 보유자만
⑦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시행규칙 별표 10) 및 **화학물질안전원 적합통보문서 11p.** ※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제조. 사용, 보관. 저장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 환경책임보험가입증서(위해관리작성대상자만 해당) 사본 제출 /환경책임보험가입 물질량은 영업허가 신청량의 150%	취급시설 보유 및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만
⑧	**종사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4대보험 가입증서 등)	공 통
⑨	**유해화학물질 장비. 기술인력 명세서** 12~14p. ※ 단,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경우 기술인력 명세서만 작성 - 종업원 10인이상 영업자는 기술인력 선임 - (기술인력조건)기술사, 석사+3년, 기사+5년, 산업기사+7년, 기능사+7년	공 통

신규 영업허가

연번	제출할 서류	해당자
⑩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15~17p. - 모든 영업자는 관리자를 2인 선임(책임자1,점검원1)/취급량에따라 추가, 단,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장은 1명만 선임가능 - (관리자조건)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화학관련학교+교육, 경력3+교육 - 관리자 자격 취득을 위하여 해당 자격증이 없을 경우 **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의 교육 이수필요** . 〈사용업. 제조업. 운반업〉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과정(32h) . 〈판매업〉 알선판매업관리자 자격취득과정(8h) ←페인트판매	공 통 -기술인력. 관리자 경력산정시 자격증 취득이전 경력합산 가능 . 단, 화학관련 실무업무 경력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기술인력이 관리자 겸임가능
⑪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증**(지자체발급) 18p. ※ 영업허가로 의제처리를 원할 경우 지자체제출용으로 ②~⑦ 서류 추가 제출 - 단, 장평, 위해 조건부허가의 경우는 의제처리 해당안됨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취급자만
⑫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공 통
⑬	대표자 및 임원의 **개인정보동의서** 19p. / **외국인대표자** 23p.	공 통
⑭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공 통
⑮	차량 **책임보험** 및 **책임공제 가입 확인서** 사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 발급)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 ] 제 조 업 [ ] 판 매 업 [ ] 보관 · 저장업	[ ] 운 반 업 [O] 사 용 업	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 소(사업장)				
신청사항	취급시설 보유 여부	[ ] 없음 [ ] 자가 [ ] 위탁 [ ] 임차			
	① 보관 · 저장시설 소재지				
	② 취급품목명			③ 전체연간취급량	
	종업원수			사업장면적	
	④ 보관 · 저장시설능력			⑤ 운반시설 능력	
	⑥ 매출액(사업장)	억원			
	⑦ 주요저장시설 현황	저장시설번호 또는 명칭	용 량(㎥)	저 장 화 학 물 질	
				명 칭	1일 평균사용량 / 주 요 용 도
	⑧ 관리자공동 활용여부	[ ] 단독 [ ] 공동		⑨ 취급시설 공동활용 여부	[ ] 단독 [ ] 공동
	⑩ 위해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	[ ] 대상 [ ] 비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강유역환경청장 귀하

제출자	제출서류	참고사항	서식
모든 사업장	1. 영업변경 허가신청서	※ 수수료 20,000원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 서명란에 업체 직인 또는 서명 기재 필	p.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46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보관·저장시설의 총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 품목, 장외평가정보, 사무실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 전·후 비교 가능한 증명 서류	
	3. 유해화학물질 영업등록증. 허가증 원본	※ 분실 시 재발급신청서 작성	p.6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4.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 용도 상세 기재(판매, 알선판매, 산세용 등) ※ 기존 품목 및 변경 품목 모두 기재	p.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44호
해당 사업장	5.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변경검토서와 위해관리계획서 ※ 기존시설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장외영향이 확대)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 (장외영향이 확대되지 않은 경우) 변경검토서 및 안전원의 검토결과서	p.8~12(변경검토서)
	6.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8.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검사결과서 첨부)	※ 수수료 9,000원(전자수입인지 사이트 : www.e-revenuestamp.or.kr)	p.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34호
	9. 기타 변경사항별 필요 서류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영업종류 [ ] 제조업 [ ] 판매업 [ ] 보관 · 저장업 [ ] 운반업 [ ] 사용업		

변경사항	① 변경 전	②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20,000원

취급시설 및 장비기준

■ 선임시기	· 사업개시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업원 고려 선임 ·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내 선임
■ 관리자 직무	【1】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 및 위해방지에 대한 총괄 관리 【2】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 및 위해방지에 대한 현장 실무 업무 수행 □관리자 직무범위 : ①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②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③유해화학물질의 진열 · 보관에 필요한 조치 ④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 ⑤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⑥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필요한 조치 ⑦수급인의 관리 · 감독에 필요한 조치 ⑧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⑨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 제출에 필요한 조치 ⑩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필요한 조치 ⑪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취급시설 · 장비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주차장 및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가 있는 세차시설(운반업만 해당)
  작업복을 탈의하고 세탁 등이 가능한 탈의시설
-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서 작업자가 착용할 수 있는 개인보호장구
-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방 설비
- 누출 . 배출된 유해화학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감지 . 경보장치 또는 CCTV
- 차량 충돌로부터 배관이나 취급설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돌방지벽 등
- 물질 특성에 맞는 적정한 온. 습도 또는 압력 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계측장치
- 물질의 누출 . 유출 시 물질의 차단이 가능한 긴급 차단설비
- [별표5]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나 설비

Ⅰ. 영업허가 6) 취급시설 · 장비 및 기술인력

취급시설 · 장비 설치운영 사례

▪ 배관 · 밸브

집수조	배관지지대 설치	밸브 개폐상태 표기	물질 종류, 이송방향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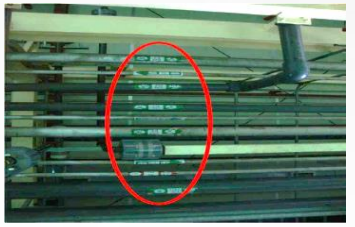

▪ 실외저장시설

누액감지기 및 경보기 설치	경보기 및 가스감지기 설치

Ⅰ. 영업허가 6) 취급시설 · 장비 및 기술인력

취급시설 · 장비 설치운영 사례

▪ 피해저감

개인보호구 및 방재도구	세안 · 세척설비 설치

▪ 취급물질 주입구

적재. 하역장소에 트렌치 설치	적재. 하역장소에 유출방지턱 설치	주입구 잠금장치

기술인력

■ 자격 기준	기술사 (7)	· 화공, 화공안전, 가스,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기술인력
	기 사 (7)	· 화공, 산업안전, 가스,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7)	·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기능사 (3)	· 환경, 위험물, 가스	
	기타 안전교육 (32시간)이수자	· 전문대학 이상 대학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관련학과 졸업자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관리자의 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화학 관련 교과목 + **양성과정 32시간** 이수자
- 「초·중등교육법」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 + **양성과정 32시간** 이수자
-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자 + **양성과정 32시간** 이수자

※ 교육 신청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http://edu.kcma.or.kr 02-3019-6691~4)

■ 선임기준

【1】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 1명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겸임 가능

【2】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① 연간 취급량에 따른 선임기준

취급량(톤/년)	선임인원
1,000톤 미만	1 명
1,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2 명
10,000톤 이상 100,000톤 미만	3 명
100,000톤 이상 1,000,000톤 미만	4 명
1,000,000톤 이상	5 명

② 종원원에 따른 추가 선임기준

업 종	추가 선임인원
사용업	5,000 명당 1 명
제조업, 보관 · 저장업, 운반업, 판매업(취급시설없이 판매자 제외)	500 명당 1 명

기술인력

■ 선임기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은 다음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1인 이상 선임** **(다만, 종업원이 10인 미만인 운반업, 판매업 또는 사용업의 경우 제외)**	
■ 자격기준	기술사 (7)	· 화공, 화공안전, 가스,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석사 (12)	· 산업안전 · 기계 · 화공 · 수질환경 · 대기환경 · 폐기물처리 · 화학분야, 고분자공학, 공업화학, 재료공학 · 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
	기 사 (7)	· 화공, 산업안전, 가스,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
	산업기사 (7)	·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
	기능사 (3)	· 환경, 위험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 외 인정되는 자격증

1. 독극물 취급기능사
2. 유독물 취급기능사

관리자 및 기술인력 선임신고

내 용		비 고
공통 자료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	- 별지49호서식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서	- 별지50호서식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명세서	7p 참고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증명서 발급-사업장회원-가입자 명부조회)	- 10인 미만 사업장만 ※ ***종사자수[참고] 확인하기 위함***
	재직증명서 및 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이력 조회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회원서비스-취득이력 조회)	※ *현재 **재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시 고용보험 취득이력 제외)
자격 사항 증빙자료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국가 자격증 소지자
	화학 관련 교과목 성적표 또는 졸업증명서	- 화학관련 교과목 이수자
	경력 증명서	- 화학물질 취급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자
	교육 이수증(신규, 계속, 보수)	- 화학관련 교과목 이수자 - 화학물질 취급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자

- 사업장 종사자 수 확인 방법(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증서 발급(가입내역확인) → 증명서 신청/발급 → 사업장회원 → 가입자 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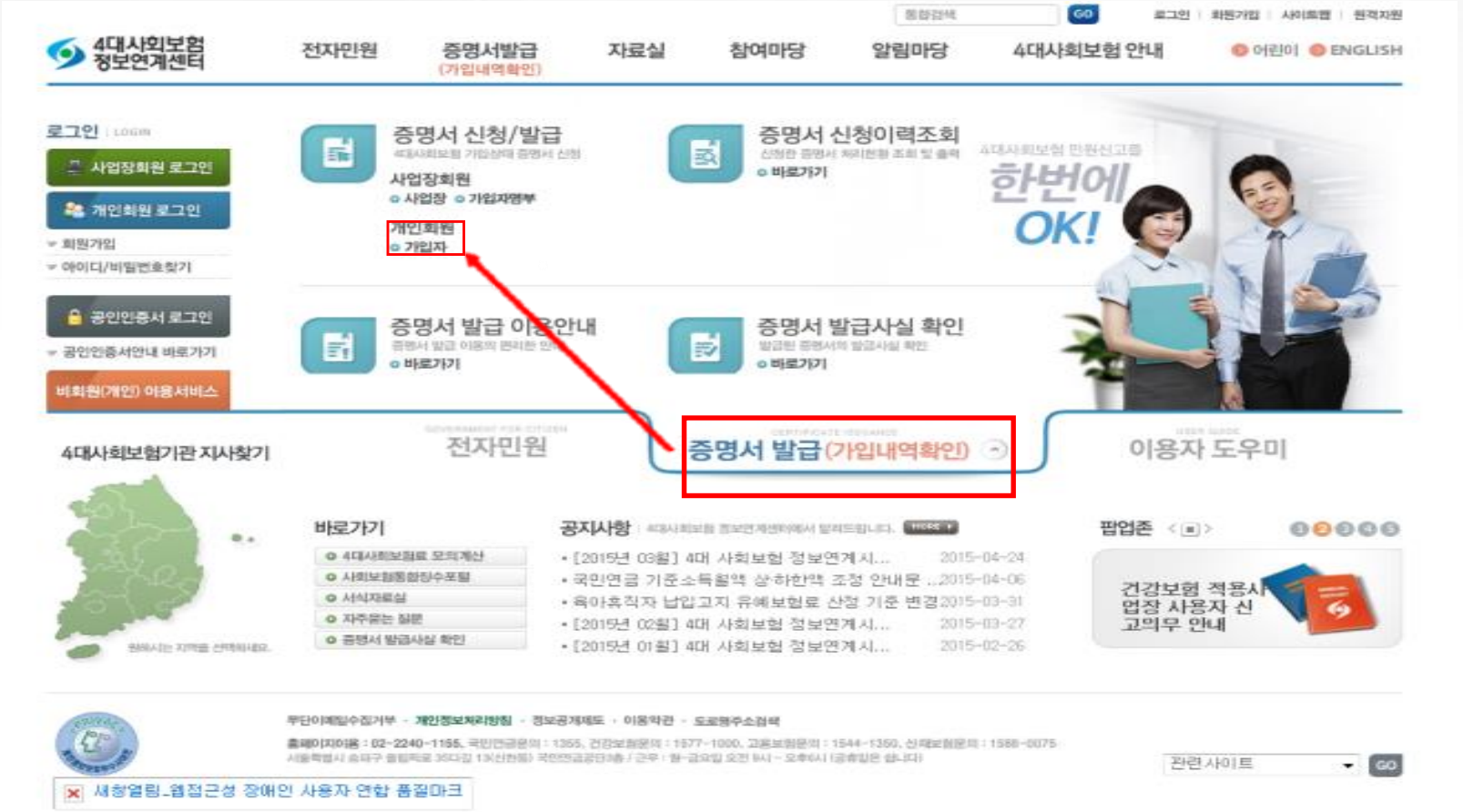

- 고용보험 취득이력 조회(고용보험)

1. 고용보험(https://www.ei.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 회원 서비스 → 조회서비스 → 취득이력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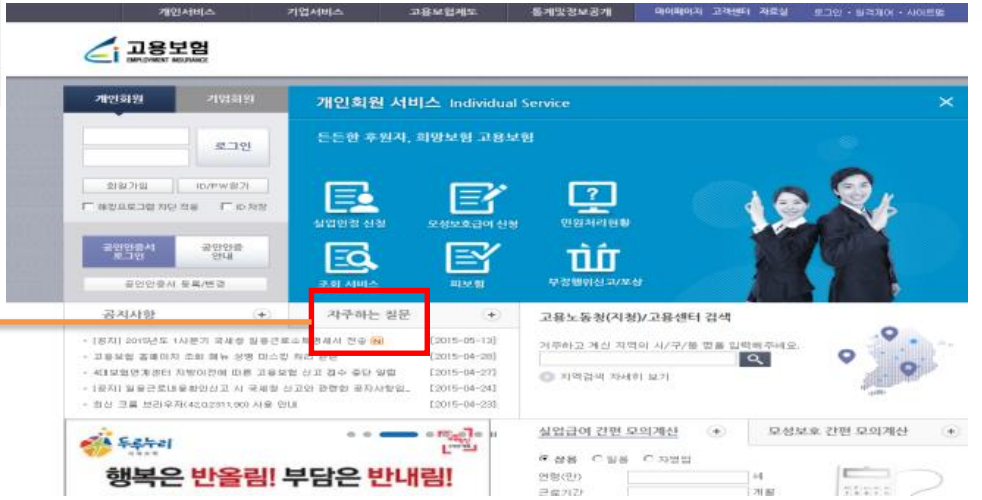

2. 설치검사 · 정기검사

2. 설치검사 · 정기검사 1) 개 요

❑ 개 요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취급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 ·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설치 · 운영**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검사(설치/정기/수시)**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검사 (설치/정기/수시)	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검사대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안전진단	진단기관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진단대상	①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될 경우 ②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에 따른 사업장

•관련법 :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4 - 2호)

2. 설치검사 · 정기검사 1)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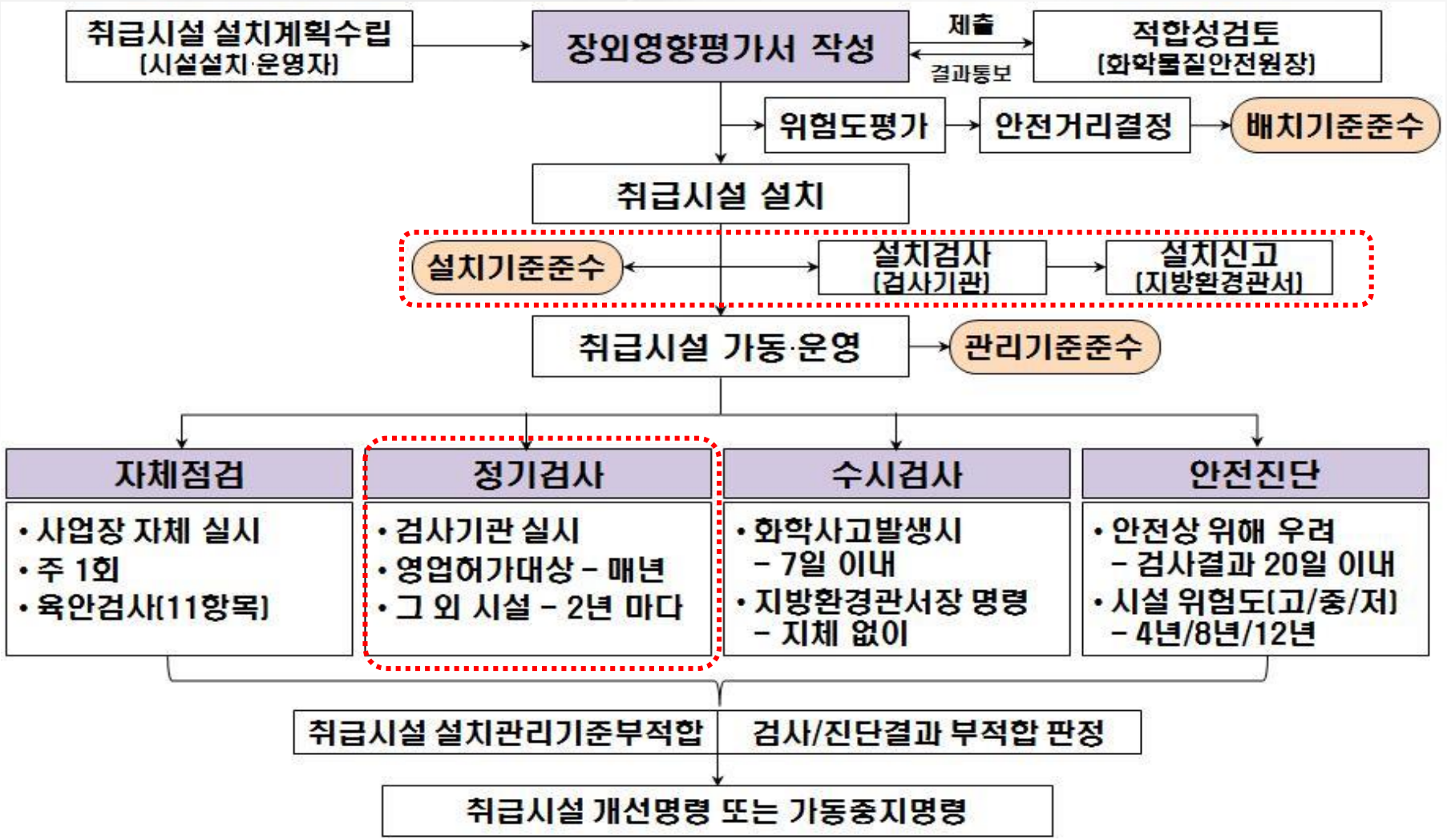

2. 설치검사 · 정기검사 2) 검사 시기

❑ 검사 시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은 전문기관의 검사(설치/정기/수시)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구 분			시기/주기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정기검사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마다(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마다(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화학사고 발생한 후 7일 이내
	화학사고 발생 우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안전진단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	결과 없는 경우	4년마다
		고위험도	4년마다
		중위험도	8년마다
		저위험도	12년마다

- 설치검사 기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에 하여야 함.
- 설치검사 유예 사항 : '15년 이후 현재 경과기간으로 장외영향평가 적합 후 신청 가능
- 안전원 조치사항 : 적합판정 전이라도 안전원의 조건부 공문을 첨부하여 설치검사 신청 가능

❑ 검사 절차

■ 검사(설치검사/정기/수시검사)는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

- 검사 신청 방법 : 전문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회원 등록하여 신청
- 검사 수수료 : 환경부 고시 제2016-57호에 의거 산정(견적서 포함)
- 설치검사는 '15년 이전 시설로 신법(화관법)이 아닌 구법(유해법) 적용을 받음.
  -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설치검사 기준이 강화되었음.

2. 설치검사 · 정기검사 3) 검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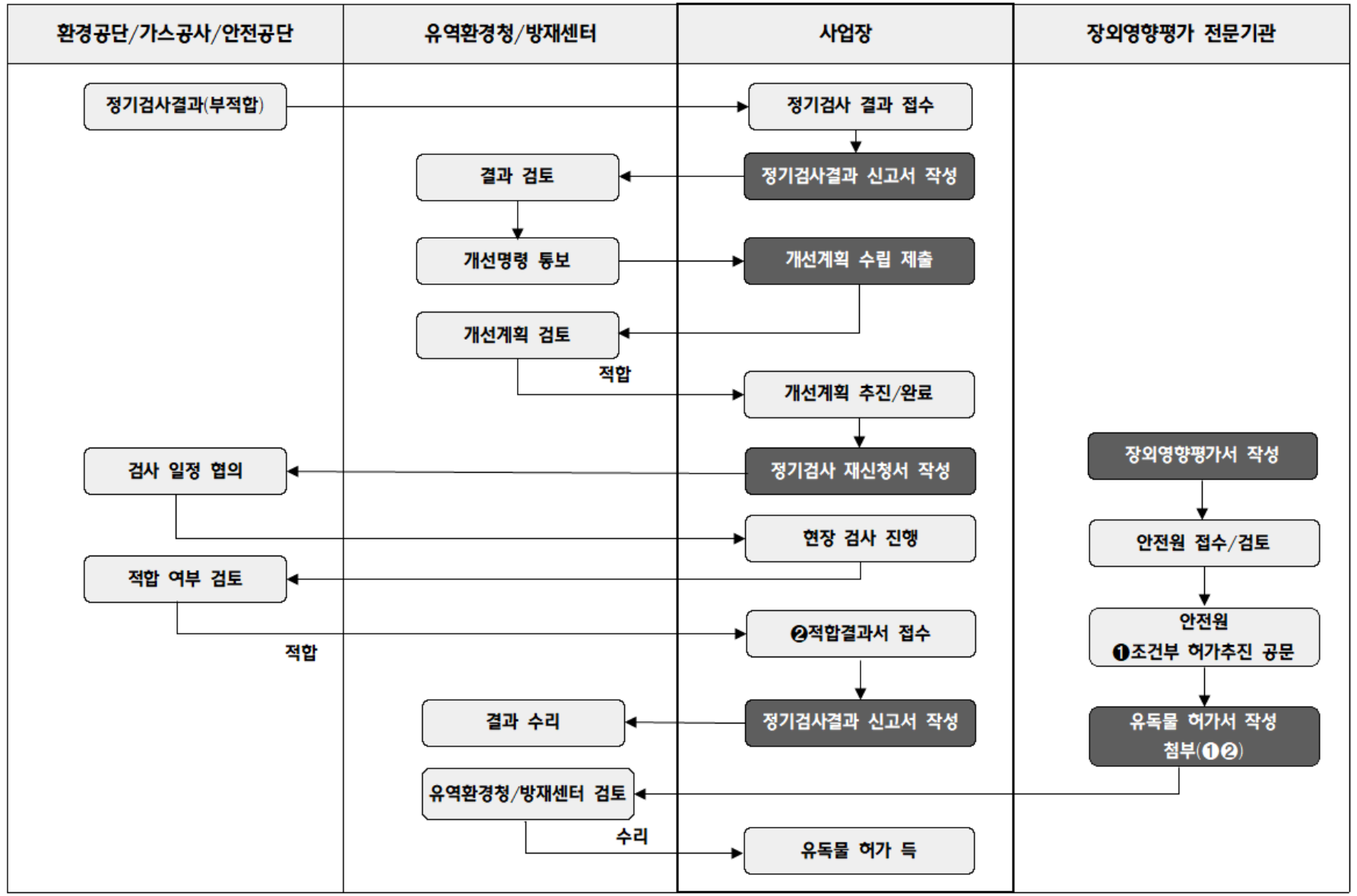

2. 설치검사 · 정기검사 4) 준비서류 목록

1	**유해화학물질 허가증**	있음	☐	없음	☐
2	**방지시설(폐수, 대기배출시설 등)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있음	☐	없음	☐
3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화학물질관리협회)** 법제 49조 참조	있음	☐	없음	☐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된 검사서 또는 확인증** - 지하저장시설 누출, 가스저장탱크, 전기설비, 압력탱크 검사서 등	있음	☐	없음	☐
5	**유독물 운반차량 등록증(차량관련서류 등)**	있음	☐	없음	☐
6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있음	☐	없음	☐
7	**PFD, P&ID 보유여부(공정흐름도, 공정배관계장도)**	있음	☐	없음	☐
8	**근로자 안전교육 관련 서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신고서 · 확인증** - 연간교육일지, 관리자 · 취급자 교육 수료증, 교육결과보고서) 법제33조 참조	있음	☐	없음	☐
9	**안전보호구 인증서(방독면,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장화, 정화통 등)**	있음	☐	없음	☐
10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 (법제 50조, 시행규칙 제56조2항, 별지 제 75호서식 참조)	있음	☐	없음	☐
1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법제 26조, 시행규칙 별지 제 42호서식 참조)	있음	☐	없음	☐
12	**장외영향평가서 적합결과서** (법제23조)	있음	☐	없음	☐
13	**위해관리계획서 적합결과서(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 향상계획서, 예방규정 등)** 법제41조	있음	☐	없음	☐
14	**누출사고대비 프로그램(방제시나리오), 차량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방제카드**	있음	☐	없음	☐
15	**사업장 등록증 및 통장사본(세금계산서 발행용)** - 발행일자, 세금계산서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메일주소, 기재 필수	있음	☐	없음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고 취급시설	
	검사기관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1부	수수료 매품목당 9,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7,200원)

작성방법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는 검사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설치,수시)검사 결과 신고 안내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설치,수시)검사 결과 신고 안내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사결과 신고 시 적합 · 부적합 모두 신고하여야 하여 부적합은 추후 취급시설의 개선명령을 명함. 부적합 신고 안내 글 참조)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련 신고 서식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의경우 [붙임1]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서 제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 수시검사의경우 [붙임2]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서 제출
3. 설치,정기,수시 검사신고서 제출 시 검사결과서와 정부수입인지(수수료 9000원, 전자화폐 · 전자결제 7200원 현재 미적용)를 구매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인천, 시흥, 안산의 경우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 (정왕동)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그외 수도권 지역은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하시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윤상효 전문위원
T.031-790-2898
F.031-790-2899

2. 설치검사 · 정기검사 6) 부적합 사례

업 종	제조업	●	사용업	●	보관 · 저장업	●	판매업	●	운반업	
지적 사항	저장, 보관시설 주변 바닥면 재질, 방수처리 및 균열 · 손상 여부									
점검표 검사항목	• 건축물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않는 내구성 재료 사용, 적당한 경사를 두고 최저부에 집수설비 설치									
사 진	부적합					적합				
	바닥면 균열 및 내화학 페인트(도장)미도포					콘크리트 10cm 21Mpa 이상 및 내산페인트 도장 등				

2. 설치검사 · 정기검사 6) 부적합 사례

<table>
<tr><td>업 종</td><td>제조업</td><td>●</td><td>사용업</td><td>●</td><td>보관 · 저장업</td><td>●</td><td>판매업</td><td>●</td><td>운반업</td><td></td></tr>
<tr><td>지적 사항</td><td colspan="10">탱크의 과충전 예방 시설/ 벤트라인 설치 및 방지지설 연결 상태</td></tr>
<tr><td>점검표 검사항목</td><td colspan="10">• 물질의 폭발 등에 의하여 설비내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내부의 물질 또는 증기를 외부로 적절히 방출할 수 있는 구조 저장설비의 통기관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적절한 대기방지지설 연결 확인</td></tr>
<tr><td rowspan="3">사 진</td><td colspan="5">부적합</td><td colspan="5">적합</td></tr>
<tr><td colspan="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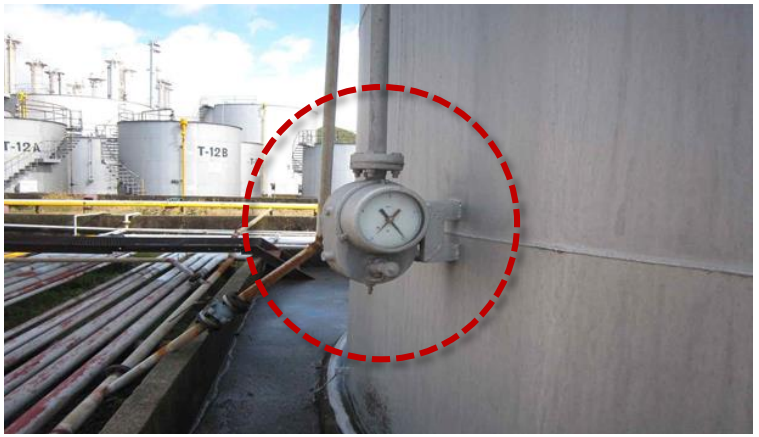 </td><td colspan="5"> </td></tr>
<tr><td colspan="5">압력계, 수위계 고장</td><td colspan="5">수위계, 압력계, 통기관(벤트, 브리더 밸브 설치)</td></tr>
</table>

업 종	제조업	●	사용업	●	보관 · 저장업	●	판매업	●	운반업	
지적 사항	액체상태 유해화학물질 적재 · 하역장소에 유출 방지턱 또는 트렌치 설치 유무									
점검표 검사항목	• (유해법) 시행규칙 별표3. 액체상태의 유독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장소에는 작업 시 유독물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등을 설치. • (화관법)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외 시설(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시설 포함)의 바닥 둘레에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15cm 이상)등을 설치(권고) (단, 탱크로리 용량 1/3~1/4 이상 수용능력을 갖출 것(권고))									
사 진	부적합					적합				
	유출방지턱 및 트렌치 미설치					유출방지턱(15cm) 및 트렌치설치 등				

2. 설치검사 · 정기검사 6) 부적합 사례

업 종	제조업	●	사용업	●	보관 · 저장업	●	판매업	●	운반업	●
지적 사항	취급물질별 적합한 개인보호장구 (방독면, 보호장갑, 보호신발, 보호의 등) 2set이상 비치 여부 유해화학물질 중화, 흡착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방제약품 및 자재 비치 (종류, 수량, 유효기간 확인 등)									
점검표 검사항목	•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장비 구비, 개인보호장구 2set 이상 (출입자 및 방문객용 포함)비치									
사 진	부적합						적합			
	부적절한 개인보호구(우비,일반장화)						개인보호구 및 방제장비(흡착포 ,방제약품) 비치			

2. 설치검사 · 정기검사 6) 부적합 사례

<table>
<tr><td>업 종</td><td>제조업</td><td>●</td><td>사용업</td><td>●</td><td>보관 · 저장업</td><td>●</td><td>판매업</td><td>●</td><td>운반업</td><td>●</td></tr>
<tr><td>지적 사항</td><td colspan="10">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시설별 관련 표시 규정을 준수</td></tr>
<tr><td>점검표 검사항목</td><td colspan="10">• 경계표시 및 경계책 등 설치(실내 · 외 저장·보관시설 및 운반시설(옆면: 국제연합번호 및 그림문자, 뒷면「 유해화학물질 」문구 표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
단, 제조 · 사용시설(“관계자외 출입금 지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이라는 표시판)</td></tr>
<tr><td rowspan="3">사 진</td><td colspan="5">부적합</td><td colspan="5">적합</td></tr>
<tr><td colspan="5">
</td><td colspan="5">
</td></tr>
<tr><td colspan="5">표시기준 미준수</td><td colspan="5">저장시설 및 운반시설 표시기준 준수</td></tr>
</table>

<table>
<tr><td>업 종</td><td colspan="2">제조업</td><td>●</td><td colspan="2">사용업</td><td>●</td><td colspan="2">보관 · 저장업</td><td>●</td><td colspan="2">판매업</td><td>●</td><td colspan="2">운반업</td><td></td></tr>
<tr><td>지적 사항</td><td colspan="15">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구분 보관</td></tr>
<tr><td>점검표 검사항목</td><td colspan="15">• 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보관할 경우 칸막이 또는 구획선을 설치하여 구분 보관
(칸막이 설치 경우 : 혼합보관 시 누출 될 경우 유해성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td></tr>
<tr><td rowspan="3">사 진</td><td colspan="8">부적합</td><td colspan="8">적합</td></tr>
<tr><td colspan="8"> </td><td colspan="8"> </td></tr>
<tr><td colspan="8">구획선은 설치 되어있으나 유해성이 증가하는 물질(예) 가성소다와 염산) 간 칸막이 미설치</td><td colspan="8">물질별 칸막이 설치</td></tr>
</table>

2. 설치검사 · 정기검사 6) 부적합 사례

<table>
<tr><td>업 종</td><td>제조업</td><td></td><td>사용업</td><td></td><td>보관 · 저장업</td><td></td><td>판매업</td><td></td><td>운반업</td><td>●</td></tr>
<tr><td>지적 사항</td><td colspan="10">운반시설에 설치된 유출배관에 유량조절밸브는 핸들형(Wheel Valve) 구조</td></tr>
<tr><td>점검표 검사항목</td><td colspan="10">• 운반저장설비에서 저장시설로 배관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경우 운반차량 측 유출배관에 긴급차단 밸브와 유량조절밸브를 각각 설치. 이 경우 유량조절밸브의 수동손잡이는 핸들형(Wheel Valve) 구조
(설치검사(필수), 정기검사의 경우 2019.12.13.까지 보완)</td></tr>
<tr><td rowspan="3">사 진</td><td colspan="5">부적합</td><td colspan="5">적합</td></tr>
<tr><td colspan="5"> </td><td colspan="5"> </td></tr>
<tr><td colspan="5">토출구 볼밸브(Ball Valve) 설치</td><td colspan="5">토출구 핸들형 밸브(Wheel Valve) 설치</td></tr>
</table>

2. 설치검사 · 정기검사 6) 부적합 사례

<table>
<tr><td>업 종</td><td colspan="2">제조업 ●</td><td colspan="2">사용업 ●</td><td colspan="2">보관 · 저장업 ●</td><td colspan="2">판매업 ●</td><td colspan="2">운반업 ●</td></tr>
<tr><td>지적 사항</td><td colspan="10">(제조·사용/보관 · 저장/판매시설) 누출사고 대비프로그램(비상대응매뉴얼) 수립 여부
(운반업) 방제요령카드 작성 여부</td></tr>
<tr><td>점검표 검사항목</td><td colspan="10">• 취급물질별 적절한 누출사고 대비프로그램(또는 비상대응매뉴얼) 작성 및 비치 여부
단, 운반업의 경우 물질별 방제요령 카드 작성 및 비치 여부</td></tr>
<tr><td rowspan="3">사 진</td><td colspan="5">부적합</td><td colspan="5">적합</td></tr>
<tr><td colspan="5"></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5">누출사고 대비프로그램(또는 비상대응매뉴얼) 미작성
방제요령 카드 미작성</td><td colspan="5">누출사고 대비프로그램(또는 비상대응매뉴얼) 작성
방제요령 카드 작성</td></tr>
</table>

3. 안전진단

❑ 개 요

- 설치 . 정기 · 수시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 균열 · 부식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검사결과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검사기관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지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지정기간이 경과한 날을 전 · 후로 60일 이내에 검사기관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

- 안전진단 신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 정기 ·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4-258호), 별지 제17호서식 안전진단 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

❑ 취급시설 관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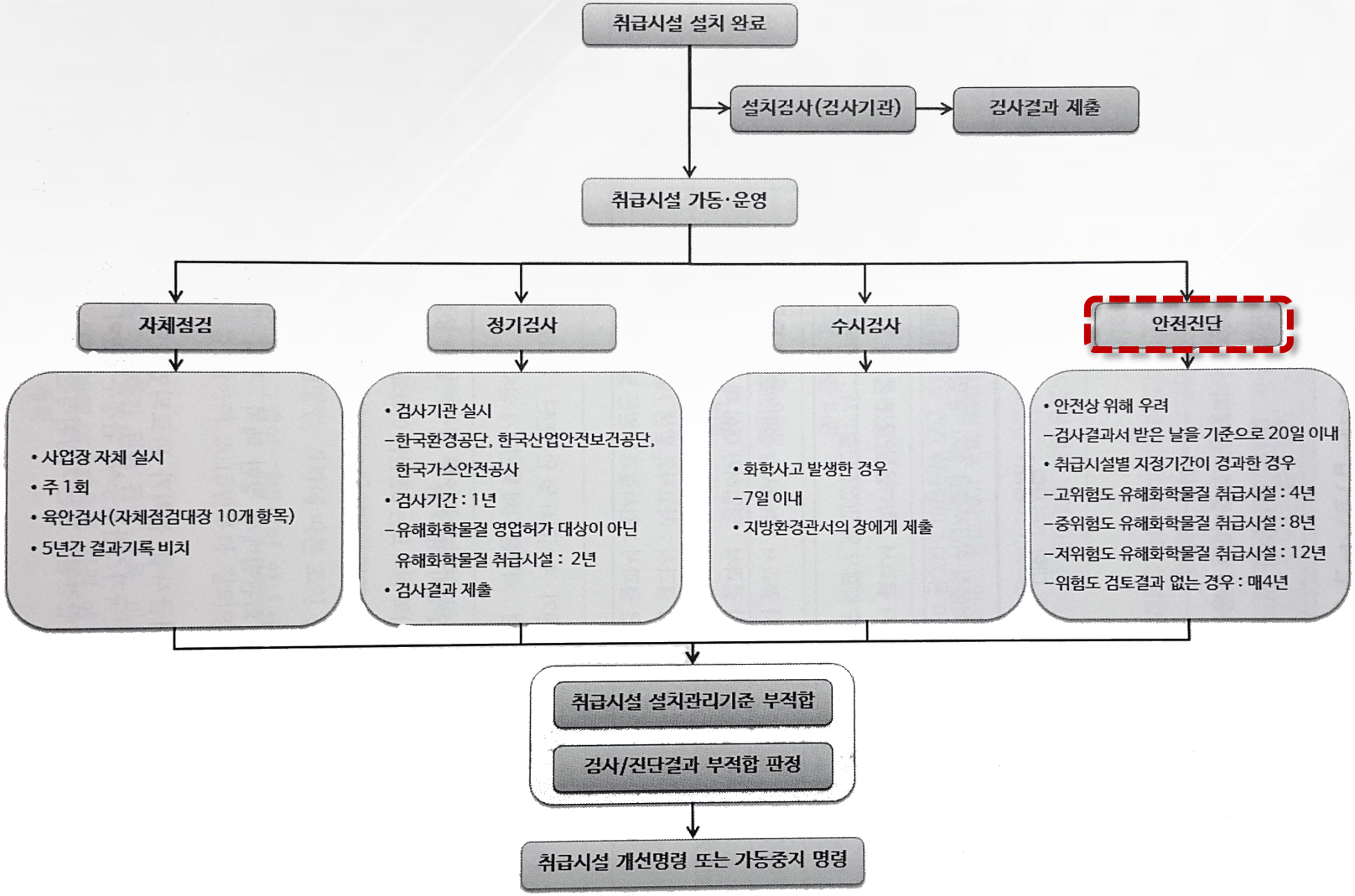
취급시설 설치 완료
설치검사(검사기관)
검사결과 제출
취급시설 가동·운영
자체점검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진단
• 사업장 자체 실시
• 주 1회
• 육안검사(자체점검대장 10개 항목)
• 5년간 결과기록 비치
• 검사기관 실시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 검사기간 : 1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2년
• 검사결과 제출
• 화학사고 발생한 경우
–7일 이내
•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 안전상 위해 우려
–검사결과서 받은 날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 취급시설별 지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4년
–중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8년
–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12년
–위험도 검토결과 없는 경우 : 매4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부적합
검사/진단결과 부적합 판정
취급시설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 명령

❑ 안전상의 우려 및 장외영향평가 결과

● 장외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장외영향평가서의 적합여부와 위험도로 구분

위험도 : 고. 중. 저

- 저 위험도 : 취급시설 안전진단 주기 12년
- 중 위험도 : 취급시설 안전진단 주기 8년
- 고 위험도 : 취급시설 안전진단 주기 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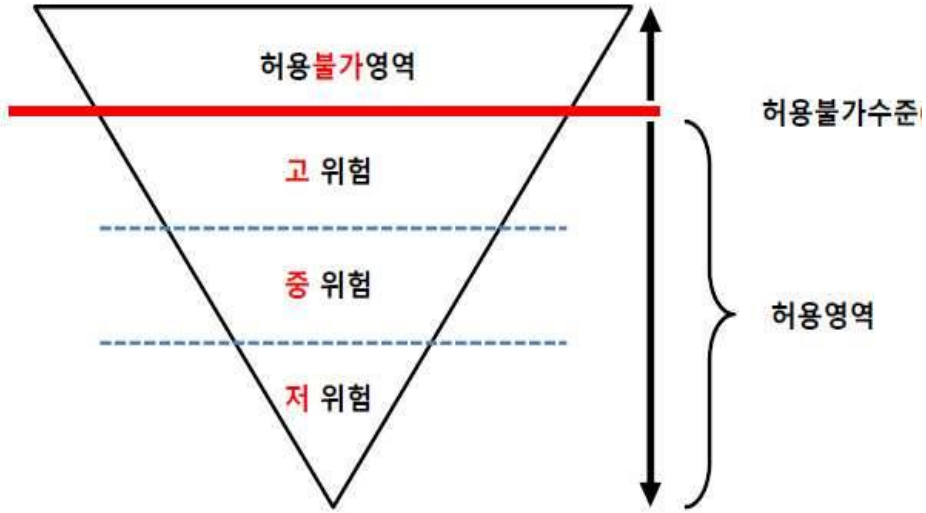

안전진단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		접 수 일 자		처리 기간	진단희망일자로부터 30일 이내

신 청 인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세부내용	취급시설 소재지
	진단대상 취급시설
	[ ]제조 · 사용시설 [ ]실내 저장 · 보관시설 [ ]실외 저장 · 보관시설
	[ ]지하 저장 · 보관시설 [ ]차량운반시설 [ ]배관이송시설
	진단희망 연월일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사기관의 장 귀하

❑ 안전진단 항목 및 방법

● 안전진단 항목은 기본항목, 선택항목 및 지적항목으로 분류

- 특별안전진단의 안전진단항목은 기본항목과 지적항목
- 정기안전진단의 안전진단항목은 기본항목과 선택항목
  - ㅇ 선택항목은 특별히 위험성이 높은 안전진단 대상시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그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함
  - ㅇ 지적항목은 검사결과 안전상 위해가 우려된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적한 항목을 의미

● 안전진단 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본항목	장치분야	• 계측장치 위험성 • 안전장치 위험성	• 방제장치 위험성 • 기타 안전장치 위험성
	설비분야	•용기,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위험성 •배관설비 위험성	•기타 설비 위험성
	운영분야	• 운전방법 위험성 • 응급대응방법 위험성	• 유지보수방법 위험성
선택 항목*		• 노후설비 위험성 • 고압설비 위험성 • 고온설비 위험성	• 맹독성 가스설비 위험성 • 기타 고위험설비 위험성
지적항목		• 설치 · 정기 · 수시 검사결과 안전상 위해가 우려된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적한 항목	

*선택항목 선택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안전진단대상 시설의 안전관리상 특수성

· 안전진단 인력과 장비의 가용성

❑ 안전진단 항목 및 방법

● 안전진단은 서류조사, 외관검사 및 비파괴 시험 순으로 각 단계별 결과에 따라 실시

① 서류 조사	② 외관 조사	③ 비파괴시험
(대상) • 사전서면검사자료 • 도면 • 기본 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수리보수 기록 •기타 관련 서류	(대상) • 부식 • 균열 • 침하 • 기타 외관에 대한 검사	•(대상) • 두께 측정 • 경도 측정 •침탄도 즉정 •초음파 검사 •기타 비파괴시험

● 안전진단 결과 신고

• 안전진단을 실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완료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 운영하는 영업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안전진단결과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제 호

안전진단 결과서

1. 상호 : 2. 취급시설의 종류 :

3. 사무소 소재지 : 4. 대표자 성명 :

5. 취급시설 소재지 :

6. 안전진단 실시자 성명 : 7. 안전진단 연월일 :

8. 차기 정기 안전진단일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첨부 : 안전진단보고서

발급검사기관명(주소):

담당부서: 전화번호:

4. 자체점검 및 관리대장

4. 자체점검 및 관리대장 1) 자체점검대장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연월일	점검시간 (00:00 ~ 00:00)	소속	성명	서명

점검 항목	이상 유무	비고
①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 · 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 · 누출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②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③ 액체 ·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④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⑤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장비의 부식 · 손상 · 노후화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⑥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 · 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⑦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 · 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⑧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 · 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⑨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 · 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⑩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개인보호장구가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⑪ 유해화학물질 저장 · 보관설비의 부식 · 손상 · 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 · 누출이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 주 1회 작성 비치**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화학물질 [ ] 제조 [ ] 수입 [ ] 사용 [ ] 판매 관리대장

제품(상품)명:	주요용도:				
금지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1.		2.		3.
함량:	1.	%	2.	%	3. %

(단위: 톤)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비고
연월일	이월량	제조 · 수입 · 구입량		구입명세				연월일	사용 · 판매량		판매명세					
		구분	수량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구분	수량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297㎜×210㎜[백상지 80g/㎡]

5. 유해화학물질 표시

5. 유해화학물질 표시 1) 표시방법

❑ 법적 근거

●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 · 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 · 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 전화번호 · 주소 등에 관한 정보
7.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 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유해화학물질 표시 1) 표시방법

❑ 고려사항

대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는 자
이행 기한	종전 유해법에 따라 유독물 표시를 한 자 중 개정규정의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방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행
이행 방법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 취급시설, 취급현장 보관/저장 또는 진열장소. 운반차량에 유해화학물질 표시
벌칙 및 행정처분	• 최대 영업정지 처분 가능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고려 사항	• 취급 유해화학물질별 국제연합번호 확인 필요 • 운반차량 용량에 따라 표시방법이 다르므로 운반차량 용량 사전 확인 필요

5. 유해화학물질 표시 1) 표시방법

❑ 분류표시의 의무화

- 화관법에서는 유독물질 뿐만 아니라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 대비 물질의 분류 표시를 의무화
  - 기존 유해법에서는 유독물을 대상으로 분류 · 표시기준을 고시하여 관리

-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나 보관 · 저장 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운반, 취급하는 사람 뿐 아니라 사고시 유해성 및 대응정보를 제공하여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
  - 취급 시설 · 진열 · 보관장소와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 및 유해화학물질 용기 · 포장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함
  - 유해화학물질 표시는 제조 또는 수입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용기에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화관법에서는 대상 범위를 유해화학물질로 확대하였고 오존층 유해성물질의 분류기준 및 국제연합번호 (UN No.) 항목이 추가
  - 유해법에서 유독물에 표시한 항목은 유독물의 명칭 또는 제품명 ·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 · 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 정보를 표기

5. 유해화학물질 표시 1) 표시방법

❑ 표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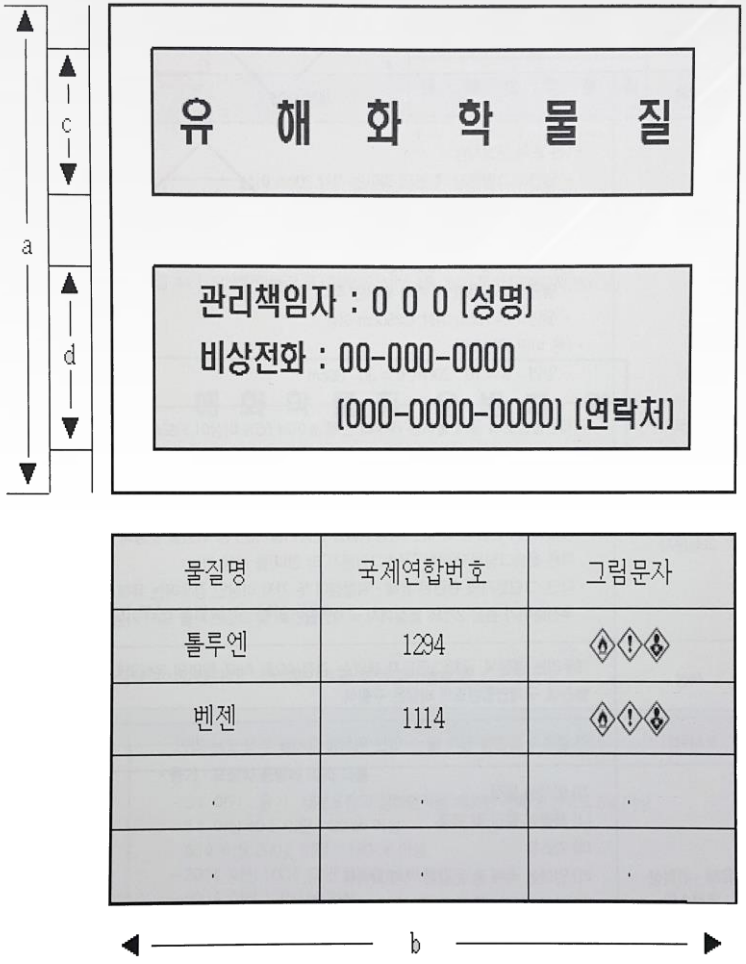

물질명	국제연합번호	그림문자
톨루엔	1294	
벤젠	1114	
.	.	.
.	.	.

항 목	세부 내용
양식크기	a=50㎝ 이상, b=(3/2)a, c=(1/4)a, d=(1/4)a
글자크기	• 유해화학물질 등 글자의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도록 조정
색상	• 색상: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글자는 빨간색, 관리책임자와 비상전화의 글자는 검정색
표시위치	• 표시위치: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 저장시설 또는 진열 · 보관 장소의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5. 유해화학물질 표시 1) 표시방법

❑ 표시방법

•용기 ·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 단일 용기 · 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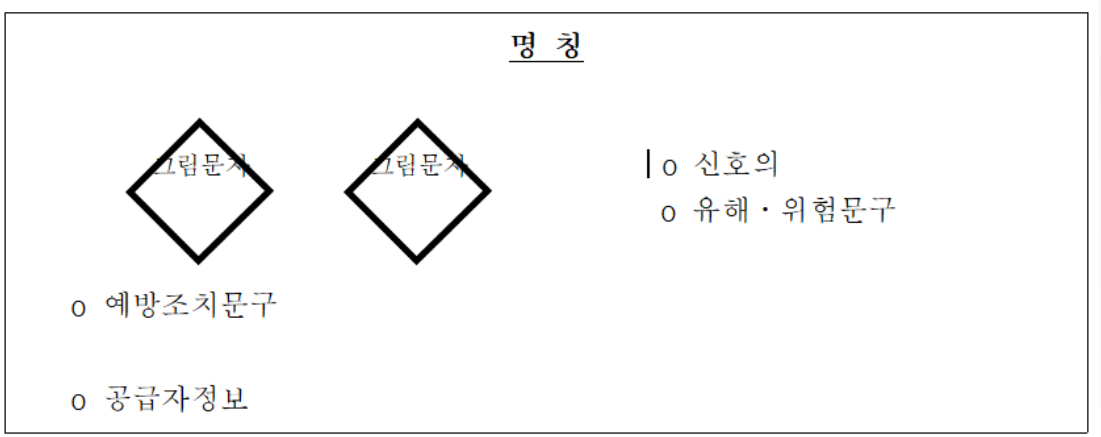

항 목	세부 내용
양식크기	용기 · 포장의 용량에 따라 다름. 5 ℓ 미만 : 용기 · 내부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5 ℓ 이상 50 ℓ 미만 : 90 ㎠ 이상 50 ℓ 이상 200 ℓ 미만 : 180 ㎠ 이상 200 ℓ 이상 500 ℓ 미만 : 300 ㎠ 이상 500 ℓ 이상 : 450 ㎠ 이상
그림문자크기	• 전체 크기의 40분의 1 이상
색상	•체 크기의 바탕은 흰색 또는 용기 · 내부포장 자체의 표면색으로 하고, 글자(그림문자는 제외한다)와 테두리는 검정색

5. 유해화학물질 표시 2) 대응방안

❑ 대응방안

- 유해법에 따라 유독물질 표시를 한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
  - 유해화학물질 표시 부착을 위반하는 경우, 3차 위반시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는 취급 유해화학물질별 국제연합번호를 확인해야 하며, 운반차량 용량(1톤이하/1톤초과)에 따라 표시가 다르므로 운반차량의 용량을 확인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표시에 대한 정보는「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4-45호), 및 유독물 GHS 지원시스템(http://ncis, nier.go.kr ghs/)을 통해 확인 가능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4-45호 별표 4(분류, 표시 목록(제13조 관련))의 유독물질, 금지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목록에 대한 유해성분류 코드와 국제연합번호 고시 확인

5. 유해화학물질 표시 2) 대응방안

❑ 대응방안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그림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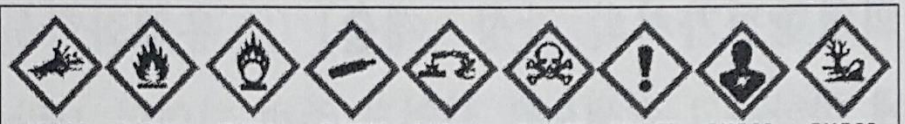

유독물 또는 기존 화학물질 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97-1-4	구아자틴 [Guazatine]	13516-27-3 108173-90-6	급성 독성-경구(3.1) 급성 독성-경피(3.1) 급성 독성-흡입(3.1) 피부 부식성/자극성(3.2)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 표적장기-1회 노출(3.8)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4 4 2 2 1 3 1 1	GHS05 GHS06 GHS09	위험	H302 H312 H330 H315 H318 H335 H400 H410	-
97-1-5	글루타르알데히드 [Glutaraldehyde]	111-30-8	급성 독성-경구(3.1) 급성 독성-흡입(3.1) 피부 부식성/자극성(3.2) 피부과민성(3.4)	3 2 1 1	GHS05 GHS06 GHS08	위험	H301 H330 H314 H317	-

❑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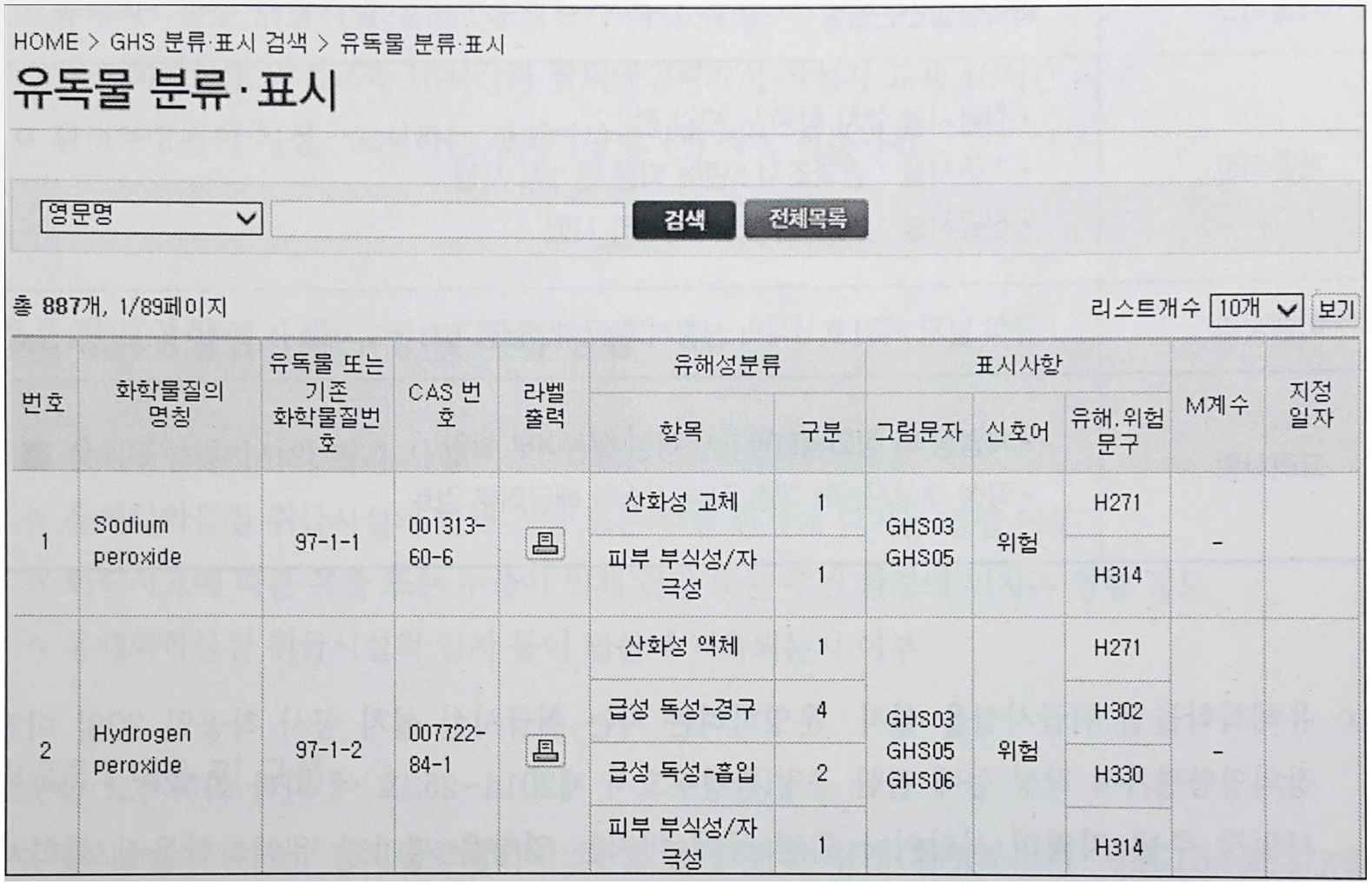

HOME > GHS 분류·표시 검색 > 유독물 분류·표시

유독물 분류·표시

영문명 | 검색 | 전체목록

총 887개, 1/89페이지 리스트개수 10개 보기

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 또는 기존 화학물질번호	CAS 번호	라벨 출력	유해성분류		표시사항			M계수	지정 일자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1	Sodium peroxide	97-1-1	001313-60-6		산화성 고체	1	GHS03 GHS05	위험	H271	-	
					피부 부식성/자극성	1			H314		
2	Hydrogen peroxide	97-1-2	007722-84-1		산화성 액체	1	GHS03 GHS05 GHS06	위험	H271	-	
					급성 독성-경구	4			H302		
					급성 독성-흡입	2			H330		
					피부 부식성/자극성	1			H314		

6. 화관법 관련 행정처분

❑ 화관법 관련 행정처분

-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한 대응 곤란**
- 화학물질사고의 **효율적인 예방관리 미흡**으로 근로자를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 피해 우려
- **법규위반으로 벌금 및 행정처분**
  - ▶ **5년 이하 징역 및 1억 이하 벌금**,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행위자와 대표자 양벌 규정
- 화학물질 영향평가 미실시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시 **매출액 5%이하의 피해보상금 징구**

조항	제 목	위 반 내 용	징역 (년) · 벌금(원)				행 정 처 분			
			5년 1억	3년 0.5억	2년 1억	1년 0.3억	1차	2차	3차	4차
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취급기준 미준수 (예방대책, 방재장비, 약품 등)		●			개선명령	경고	정지5일	정지1개월
28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 무허가, 허위 허가	●				개선명령	정지15일	정지1개월	
40조	사고대비물질의 관리 기준 준수	◦ 관리기준 미준수 (유출 · 누출, 도난 · 전용)	●				개선명령	정지15일	정지1개월	
41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 제출	◦ 미제출, 거짓 제출	●				개선명령	정지15일	정지1개월	
43조	화학사고 발생 즉시 신고	◦ 응급조치 미이행	●				경고	정지5일	정지15일	
14조	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 사업주의 미지급으로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			개선명령	경고	정지15일	정지1개월
24조	취급시설 배치. 설치 및 관리 기준준수	◦ 부적합 시설 운영		●			정지1개월	정지6월		

6. 벌칙 조항

❑ 화관법 주요 벌칙조항

조항	제 목	세부 내용	위 반 내 용	징역 (년) · 벌금(원)				행 정 처 분			
				5년 1억	3년 0.5억	2년 1억	1년 0.3억	1차	2차	3차	4차
40조	사고대비물질의 관리 기준 준수		◦관리기준 미준수(유출 · 누출, 도난 · 전용)	●				개선명령	정지15일	정지1개월	
41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 제출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시는 안전원에 제출(5년마다) ※물질별 지정수량은 시행규칙 별표10참조	◦미제출, 거짓 제출	●							
42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매년 1회 이상 (변경시 1개월 이내 재고지) ◦서면, 개별설명, 집합전달, 안전원 홈페이지 게재 등	◦ 미고지	●				개선명령	경고	정지5일	정지1개월
43조	화학사고 발생 즉시 신고	◦사고발생 또는 우려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응급조치(취급시설 중단) ◦사고발생시 즉시 신고	◦ 응급조치 미이행	●				경고	정지5일	정지15일	
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안전사고 예방 강구 등	◦취급기준 미준수(예방대책, 방재장비, 약품 등)		●			개선명령	경고	정지5일	정지1개월
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안전사고 예방 강구 등	◦취급기준 미준수(유지관리, 보관 · 저장, 관리자, 교육이수)		●			경고	경고	경고	정지5일
14조	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기체, 액체 증기 발생 우려가 있은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아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			개선명령	경고	정지15일	정지1개월
24조	취급시설 배치. 설치 및 관리 기준준수	◦검사 /안전진단 결과 적합판정	◦부적합 시설 운영		●			정지1개월	정지6월		

7. 기 타

❑ 유역환경청 & 방재센터 관할 구역

▷유역환경청 관할구역

명 칭		관할 구역
1	한강 유역환경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	낙동강 유역환경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하동군 및 남해군은 제외)
3	금강 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원주지방환경청 관할구역 제외), 충청남도
4	영산강 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하동군· ·남해군, 제주도
5	원주 지방환경청	강원도,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6	대구 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7	새만금 지방환경청	전라북도

❑ 유역환경청 & 방재센터 관할 구역

▷합동방재센터 관할구역

명 칭		관할 구역
1	시흥합동방재센터	인천광역시, 시흥시, 안산시
2	울산합동방재센터	울산시, 양산시
3	서산합동방재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보령군
4	여수합동방재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경상남도 남해군, 하동군
5	구미합동방재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6	익산합동방재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